

동 지침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(22.4.18)에 따라 수정·보완한  
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11판)(22.4. 시행)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 
센터(이하 학교돌봄터 포함) 상황에 맞게 수정·추가한 것임

#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(11판)

2022. 4. 25.



보건복지부  
인구정책총괄과

# 목 차

I. 개 요	1
1. 목적	1
2. 기본방향	1
II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	2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	2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	3
3. 시설 운영 세부사항	4
4. 시설 휴원 시 조치사항	5
6. 코로나19 대응 의료·방역인력 자녀 우선 이용	5
7. 행정사항	6
III. 지자체 협조사항	8
▷ 서 식 ◁	
[서식1]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	9

# I 개요

## 1. 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'22.4.18)에 따라 시설 운영 방향 제시
-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재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
  - \*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 수준 유지

**<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('22.4.18. 중대본)>**

- ▲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, ▲ 고위험군·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, ▲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,
  -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, ②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, ③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, ④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, 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

## 2. 기본방향

-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, 시설 정상 운영 원칙,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시설 운영 범위 조정
  - \*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
- 백신접종 여부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에 따른 시설의 출입,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 해제

## 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### □ 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유지

- 복지부와 지자체, 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 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 지정\*

\* 감염관리책임자 : 시설내 환자발생시 신고,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등 수행

- 시설은 확진자 다수 발생,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을 지자체에 보고,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

-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\*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

\*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-관내 보건소-소방서-선별진료소-의료기관

-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, 사전 조치 신속 시행(시설)

- ① 시설 소독 및 환기,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,  
③ 방역물품(손소독제, 보건용마스크, 자가검사키트 등) 확보 등

## 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
### □ 환경 위생 관리

- 화장실 등에 손 소독제(비누, 알콜 70% 이상 손소독제 등) 등을 충분히 비치, 관리

-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, 소독 및 환기 유지

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\*에 대한 소독(일 2회 이상 권고)

\* 문손잡이, 난간,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탁자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,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

- 시설 내 환기(일 3회 이상 자주, 매회 10분 이상 권고)

- 마스크 착용, 체온계,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비치

- 올바른 방법으로 KF94·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, 자가검사키트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

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(방대본, '22.4.25)	
1	"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"
2	"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,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"
3	"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"
4	"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"
5	"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"
6	"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"

### 3. 시설 운영 세부사항

- (출입) 시설 종사자,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출입하며, 유증상자(발열, 호흡기 증상)의 출입 자제
- (유증상자) 아래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 필요
 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 받고,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  - 검사결과가 양성(확진)인 경우, 격리기간 등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 대책본부 격리지침에 따름
  - 이용자 중 의심환자 발생 시,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확보
    - \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- (프로그램 운영)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손씻기)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 하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 없음

- (시설 내 취식)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손씻기)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 관리 하 취식 가능
  - 다만, 좌석 띄어 앉기, 테이블간 거리두기, 식사 중 대화 자제 등 감염예방 조치 권고

#### 4. 시설 휴원 시 조치사항

- 시설 휴원 시 긴급돌봄 등 서비스 제공 유지
  -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휴원 지양, 휴원 시에도 최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
    - \*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,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
  - (긴급돌봄)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되, 돌봄수요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당번제 운영 가능
    - 돌봄에 필요한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
      - \* 급식도 제공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, 도시락 배달 등 활용
  - (안부확인) 각 센터는 매일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 안부확인 을 문자,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
    - \* (확인내용) 긴급돌봄이 필요한지 여부, 아동의 건강상태, 결식우려 여부,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
  - (돌봄공백 발생시 대응) 아동의 개인별 욕구 및 사정에 맞게 지역자원\*, 친인척 등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
    - \* 지자체(총괄책임부서)는 돌봄공백 발생에 대비한 지역자원(복지시설, 아동 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 등) 연계체계를 사전에 구축 필요
  - (국고지원)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도 운영비 등 국고지원은 정상운영으로 보아 지속 지원

## 5. 의심·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

◇ (대응원칙) ①의심증상시 발생시 즉시 검사, ②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,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

※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(질병관리청 누리집, <https://www.kdca.go.kr> 참조)

- 시설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적정 진료를 받도록 안내
  - (의심)환자는 격리 공간에 격리, 전용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  - 필요시, 시·도(보건소)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  - (의심)환자의 이송 또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
- ※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

## 6. 코로나19 대응 의료·방역인력 자녀 우선 이용

-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특례
  - (지역아동센터) 「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」 돌봄 특례 사유에 '코로나19 대응 의료·방역인력의 자녀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' 추가 적용
  - (다함께돌봄센터) 「2022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」 입소 우선순위에 '코로나19 대응 의료·방역인력의 자녀로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' 추가 적용
- 우선 이용 아동 결정
  - (적용범위)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,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의 자녀

< 현장 필수 의료·방역인력 >

구분		비 고
보건의료인력	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	- 전담병원,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<b>직접 담당</b> 하는 인력에 한함
기타 지원인력		-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<b>직접 접촉</b>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

- (선정방법) 신청 당시 코로나19 대응 근무자의 자녀임을 확인 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이용 조치
  - \*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(서식1) 제출
  - 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·관리하고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
## 7. 행정사항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
  - (유급휴가) 확진으로 관할 보건소의 격리통보에 의해 격리된 종사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\* 처리 가능
    - ※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
  - (대체인력 지원) 종사자 확진 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시 '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' 사업 활용 가능
  - (업무 조정) 종사자 확진 등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자 지정, 재택·원격·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마련
- 코로나19에 지속적인 차질없는 대응을 위해 마스크, 손소독제 및 가림막 등 방역물품\* 시설 비치
  - \* 마스크, 손소독제, 체온계, 신속항원검사키트, 가림막, 소독용물티슈, 손세척제, 종이타월, 휴지, 락스, 일회용장갑 등 동 대응지침상 방역조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소모성 물품



-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집행 어려움 및 코로나19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기본 운영비 보조금 중 최대 3개월 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비를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 가능

(’21년과 마찬가지로 ’22년 기본운영비 집행시에도 계속 적용)

- \*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, 각 지자체별로 휴원 기간 중 프로그램비 집행상황, 방역물품 비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 - \* 지역아동센터 보조금(운영비)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이므로 기본운영비로 자산취득 성격의 비품 등은 구입할 수 없음
- 다만, 센터 사정(방역물품 비축 상황 등)에 따라 3개월 분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센터에 대해서는 상기 3개월 분 외에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프로그램비를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 허용
- \*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방역물품 구입비 추가 지출분 범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양

### Ⅲ 지자체 협조사항

- (현장지원) 감염병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 소통 등 유지
  - (연락체계 구축) 시설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
- (시설 상시 모니터링)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·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
- (시설휴원)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원칙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
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				
코 로 나 19 대 응  근 무 자	성명	예) 홍길동	생년월일	예) 1900.01.01
	근무일자	년 월 일 ~ 년 월 일 ※ 근무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시작일자만 표기		
	근무장소	작성예) 00병원 코로나19 병동, 00병원 검사센터 등 00구 선별검사소, 00구 방역센터 등		
	근무내용	작성예) 코로나19 관련 (간호, 검체채취, 방역, 검사 등)		
<p>본 기관은 상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>기    관    명    :    예) 00병원</p> <p>기    관    전    화    번    호    :</p> <p>기    관    장    :    예) 00병원장, 00구청장, 00구 보건소장 등    (서명 또는 인)</p>				